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장의비	위로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사·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지급

공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급여' [치료 비용] 청구 방법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②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 서류 준비	③ 청구서 작성	④ 공제회로 서류 제출	⑤ 심사	⑥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7일 이내) 공제회로 통보 통보방법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사고 등록 후 출력하여 내부결재 내부결재 후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파일 첨부하여 '통보' 처리 <p>[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p> <p>[주의] 학교장은 사고 통지를 지체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학교안전법 제7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명세서 [원본 또는 사본, 비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생략] 청구인(보호자) 통장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액 50만원 이상 ▶ 진단서 [원본] 추가 <p>※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 학교에서 '공제급여청구서'작성 후 학교장 직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또는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p>(청구서 서식 전자메일, 팩스, 우편으로 요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 ③ 서류를 취합하여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p>※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여부 결정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공제급여결정 통보서 발송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 지급결정액은 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

요양급여[치료 비용] 지급 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구분	급여	비급여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지급
	지급대상	

-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
- 일부지급**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규정된 항목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잘못 기재된 경우거나, 치료 항목이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 응급중상이 아니거나 휴일 및 야간에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내원한 응급실의 응급의료 관리료, 의료기관의 착오기체 등)

[별표]

구분	치료 항목 및 한도			
치아 보철 (한 대당)	보철	400,000원 범위 내 (2회 인정)		
	레진	12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포스트	124,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임플란트	2,00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단, 일반 보철 불가한 경우		
자기공명영상 (MRI)	1회 인정	무통제	인정	홍터 제거술 1회 인정
초음파	인정	물리치료 (도수치료, 제외중력파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불인정

-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장 자주 문의주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 해당 여부 문의
-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홍터수술(시술) 등 항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 서류 문의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자해 및 자살, 의료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가해자로부터의 보상,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등

